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61
----------	------

발의년월일 : 2020. 8. 28.

발 의 자 : 홍인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윤기배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1. 개정이유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2020.08.05.)에 따른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 (안 제6조에서 제11조)

다. 청년정책의 시책 추진 (안 제12조에서 제16조)

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청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8조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시책
5.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6.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7.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에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연구사업과 실태조사(이하 "연구사업 등"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을 지정한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와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투자국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재창조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2.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청년정책 전문가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

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대구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정책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시행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3.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시책 추진

제12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 기능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2. 청년 창업지원
3. 청년 능력개발 지원
4. 청년 주거지원
5. 청년 복지증진
6. 청년 금융생활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청년 국제협력 지원
9. 청년정책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10. 청년 사회진입 촉진 지원

제14조(청년의 지방이주 정착지원) 시장은 역외의 우수한 청년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청년공간의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청년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1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

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

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

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에게만 해당한다.

1.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해당 기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4.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